국무총리행정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/ 전화 (02) 732-7157 / 전송 (02) 720-2057 담당 양성호

문서번호 국행이 13900 -

시행일자 1997. 4. .(년)

받 음

참 조

선결			지시		
접수	일자 시간		결재·공람		
	번호				
처리과					
담당자					

제 목 지하굴착공사장 특별안전대책 추진 지시(국무총리 지시 제 1997 - 9 호)

최근 마포구 공덕동 지하철공사장에서의 가스폭발사고 등 지하굴착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지시하니 해당부처에서는 별첨 "토지굴착공사시의 준수사항"을 참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1. 지하철,가스,도로,상하수도,통신 공사 및 건축공사장 등 각종 지하굴착공사시에는 배관탐사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, 매설 개연성이 있는 지점에서의 굴착은 도면 이외에 직접 육안검사를 통해 매설 여부를 확인한 후 인력으로 굴착토록 할 것

   또한 현재 가스관 등 주요 매설물 주변 굴착공사에서의 유관부서 관리담당자 입회제도를 현장전담근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

2. 특히, 관련법규 위반 등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·감리회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는 물론 감독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위법 사실이 들어날 경우 엄중문책 할 것

3. 관계부처에서는 공사장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, 안전조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것. 끝.

국 무 총 리

받는 곳 내무부, 통상산업부, 노동부, 정보통신부, 건설교통부

<토지굴착공사시의 준수사항>

관련법령	준 수 사 항
도시가스사업법	o 가스배관 매설상황 조사(법 제30조의 3) o 타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가스회사와 굴착시행자의 협의·순회점검(법 제30조의 5) o 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(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16) - 가스배관 주변 1m이내는 가스사 직원 입회하에 인력굴착 등
도로법	o 도로점용 허가(법 제40조) o 굴착공사의 시행(법 시행규칙 제24조의 6) - 굴착공사 착공전에 공사지점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여부 확인 등
건축법	o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- 위험발생의 방지, 환경보존, 기타 필요한 조치후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(법 제31조) - 토지굴착시 지하매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위험발생 방지조치(법 시행규칙 제31조)
산업안전보건법	o 사업주의 폭발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 등 예방조치(법 제23조) o 사업주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·보건 점검 의무(법 제29조)
건설기술관리법	o 감리원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(법 시행규칙 제52조)